

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4일  
국토교통부장관

**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
행정예고**

**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지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및 조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비용분석항목 및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*2. 의견제출**

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

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주택정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 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3384, 3390 FAX : 044)201-5532